

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1. . .
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의 일부 조항이 개정('11. 6. 30.)되어 시행
됨에 따라,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
상생·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확대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
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
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

나. 유효기간 연장

- 현행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연장

3. 조례개정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, 제13조의3

나. 기 타 :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-14727(2011.7.1)호에 의거
「유통산업발전법」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정비 통보

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00미터”를 “1킬로미터”로 한다.

조례 제856호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13년”을 “2015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	제11조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
① 시장은 구미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<u>500</u> <u>미터</u>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</u> <u>킬로미터</u>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, 1. ~ 4. (생 략)	② · ③, 1. ~ 4. (현행과 같음)
부칙(구미시 조례 제856호, 2011.1.5)	부칙(구미시 조례 제856호, 2011.1.5)
제2조(유효기간) 제9조제7호·제8호,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<u>2013년</u>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제2조(유효기간) 제9조제7호·제8호,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<u>2015년</u>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관 련 법 령

◎ 유통산업발전법

제8조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)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(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)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(이하 "대규모점포등"이라 한다)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11.24]

[법률 제10398호(2010.11.24)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, 제8조제2항·제3항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]

제13조의3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6.30>

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,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0.11.24]

[법률 제10398호(2010.11.24)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]

부칙<법률 제10398호, 2010.11.24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,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, 제8조제2항·제3항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. <개정 2011.6.30>

부칙<법률 제10813호, 2011.6.30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 조치) ①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(이하 "기존 영업자"라 한다)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
② 기존 영업자는 해당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